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의 하부조직을 구체화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5. 00. ~ 0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③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인사정보1담당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하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

⑤ 인사정보2담당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경제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하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

별표 5 중 총계 “758”을 “778”로 하고, 일반직 계 “727”을 “741”로 하며,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4”를 “5”로 하고,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5”로 하며, 행정사무관·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4”를 “17”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23”을 “24”로 한다.

별표 5 방송통신서기보 1 다음에 “방호서기보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2”를 신설하며, 경찰공무원 계 2 다음에 “경정 2”를 신설하고, 검사 계 “25”를 “29”로 하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8”을 “9”로 하고,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17”을 “20”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58”을 “778”로 하고, 일반직 계 “727”을 “741”로 하며,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4”를 “5”로 하고,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5”로 하며, 행정사무관·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4”를 “17”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

기 “23”을 “24”로 한다.

별표 5의2 방송통신서기보 1 다음에 “방호서기보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2”를 신설하며, 경찰공무원 계 2 다음에 “경정 2”를 신설하고, 검사 계 “25”를 “29”로 하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8”을 “9”로 하고,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17”을 “2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①</u> <u>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u>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u> <u>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u> <u>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u> <u>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u> <u>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②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u> <u>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u> <u>관 각 1인을 둔다.</u> <u>③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로</u> <u>보하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u> <u>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서기관</u> <u>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u> <u>다.</u> <u>④ 인사정보1담당관은 「법무</u> <u>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u> <u>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u> <u>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u> <u>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u> <u>분야 정보의 수집 · 관리에 관하</u> <u>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u> <u>다.</u> <u>⑤ 인사정보2담당관은 「법무</u>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
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경제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하
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
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758</u>		<u>778</u>	+20	
		·		·	·		
		·		·	·		
일반직 계			<u>727</u>		<u>741</u>	+14	
		·		·	·		
		·		·	·		
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u>4</u>		<u>5</u>	+1	
		·		·	·		
		·		·	·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u>		<u>5</u>	+4	
		·		·	·		
		·		·	·		

<u>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시설사무관</u> 또는 <u>전산사무관</u>	<u><신 설></u>	<u>4</u>	+4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u>14</u>	<u>17</u>	+3
.	.	.	
.	.	.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u>23</u>	<u>24</u>	+1
.	.	.	
.	.	.	
<u>방호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u>경찰공무원 계</u>	<u><신 설></u>	<u>2</u>	+2
<u>경정</u>	<u><신 설></u>	<u>2</u>	+2
검사 계	<u>25</u>	<u>29</u>	+4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u>8</u>	<u>9</u>	+1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u>17</u>	<u>20</u>	+3
------------------------	-----------	-----------	----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58	778	+20
일반직 계	727	741	+14
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4	5	+1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5	+4

<u>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시설사무관</u> 또는 <u>전산사무관</u>	<u><신 설></u>	<u>4</u>	+4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u>14</u>	<u>17</u>	+3
.	.	.	
.	.	.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u>23</u>	<u>24</u>	+1
.	.	.	
.	.	.	
<u>방호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u>경찰공무원 계</u>	<u><신 설></u>	<u>2</u>	+2
<u>경정</u>	<u><신 설></u>	<u>2</u>	+2
검사 계	<u>25</u>	<u>29</u>	+4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u>8</u>	<u>9</u>	+1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u>17</u>	<u>20</u>	+3
------------------------	-----------	-----------	----